

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⑤ 아동음란물, 의식부터 바꾸자

지난해 방심위 아동음란물 신고 단 2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계 자율규제 불구, 구글 등 '무법천지' ... "단순열람도 처벌대상 고려해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의 '촉매'로 꼽히는 아동음란물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음란물과 달리 아동음란물은 국제사회도 이미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전환과 강력한 단속·처벌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방통심의위, 뒤늦게 전담팀 구성 = 아동음란물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신고와 시정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 부족 때문이다.

음란물 규제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인력부족을 이유로 아동음란물 차단에 업계 자율에 맡기다시피 하고 있지만 빈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 이어 온라인 아동음란물 6위 생산국이다. 파일 공유 사이트의 경우 2분마다 한 편씩 음란물이 올라오는데 이 중 최소 10% 이상이 아동음란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는 2010년 52건, 2011년 93건, 그리고 올 9월 현재 95건(20여건 추가 심의 중)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기관 이첩 등을 제외한 순수 신고·민원 건수는 같은 기간 17건, 2건, 67건으로 더 저조하게 나타났다.

일반 음란물에 대해 위원회는 같은 기간 각각 3893건, 3484건, 2821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고보다는 이첩과 직접 모니터링에 의존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위원회의 방송통신 모니터링 인원은 30명, 이 중 음란·선정성 등 유해정보를 심의하는 인원은 15명 뿐이다.

이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오히려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아동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잡지 않으면 최근의 신고증가도 일시적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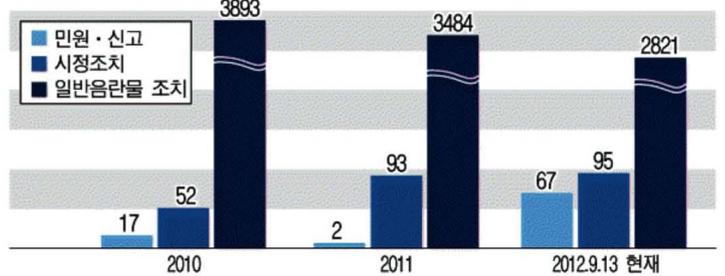
위원회는 음란물 차단을 포털 등 업계 자율에 상당부분 맡기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구글 등 해외포털의 경우 자율규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동음란물 검색에 무방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는 아동음란물을 특정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경고문구가 뜨고 관련 사이트 정보도 상당수 차단된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해외포털은 예외다. 특히 구글의 경우 성인이 로그인하면 아무 제약 없이 해외 아동음란물 열람이 가능한 상태.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국가별로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며 "본사의 방침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아동

아동음란물 신고현황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위:건수)



음란물에 대해서도 "성인인증자에 한해서만 검색이 되는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는 지난 16일야야 기존 통신 모니터링 팀과 별개로 아동음란물 등을 집중 단속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신고·단속·처벌 모두 활성화돼야 = 정부는 최근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찰은 아동음란물 제작·유통·소지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아동음란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가상국제 TF 가입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인음란물(1년, 500만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그러나 단속·처벌이 강화돼도 사회적 인식변화와 신고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파일 소지없이도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 스마트폰 SNS 등 유입로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아동음란물의 유입을 한번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고와 단속, 처벌이 활발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동음란물만큼은 단순열람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두고 처벌을 가능케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